

꿈을 가꾸며 사랑으로 감동을 주는 행복한 학교

https://icsje.goeic.kr/

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 처리 절차 안내

대상	전교생
문의처	631-8432

안녕하십니까?

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학교폭력 발생 시, 우리 학교의 처리 절차(근거: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)를 안내하고자 합니다.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전담 기구를 구성하고 학년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오니, 가정에서도 각별한 지도부탁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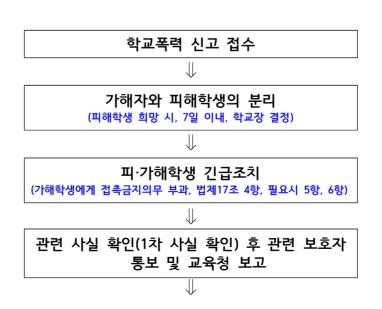
1. 학교폭력이란?

학교폭력은 학교 내.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.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사소한 괴롭힘,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<u>모든 학교폭력을 학폭법에 의한 절차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.</u> 아이들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위하여 친구들간의 단순 다툼이나 오해 등은 담임선생님과의 면담과 학생 상담, 생활 지도를 통해 교육적(교원의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고시 2023.9.1.)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2. 신고 접수 시 사안 처리 절차

학교에서는 신고·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 1) 사안조사, 2) 전담기구 심의, 3)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 및 시행, 4)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,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해당 절차의 완료를 내부결재를 통해 7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. (교육부 가이드)

* 아래의 모든 절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.



학교로 배정된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

(피, 가해 및 목격학생, 관련 자료 확보 조사시간:방과후~16:30, 장소:학교면담실)

학교폭력전담기구

단순, 경미하고 신속한 화해가 예상되는 사안 (피, 가해 및 목격학생, 관련 자료 확보)

전담조사관(학교폭력책임교사)의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후 결과 보고 (화해 조정 의사 확인, 진단서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진행 절차 고지)

피해관련 학생측 자체해결 동의/미동의 의사확인

 $\downarrow \downarrow$

전담기구 심의

(접수 후 14일 이내, 필요 시 1주 연장)

-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조건 충족 심의

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(4가지 요건)

- 법률13조의2 제1항제1조제1호~4호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
-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
-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, 또는 복구 약속을 한 경우
-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
-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,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

〈조건 모두 충족〉 + 피해 학생의 자체 해결 동의

피해 학생 자체 해결 동의서(확인서) 작성

학교의 장의 자체해결

- 가.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 하는 경우 <u>피해학생 및 보호자 동의</u>를 얻어 학교장이 자 체적으로 해결하는 제도.
- 나. 학교가 학교폭력 은폐를 종용하는 것이 아니므로, 학생의 교우 관계 및 학교폭력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해결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.
- *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사안의 학교장 자체 해결 이후에는 <u>동일 시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</u>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.
- -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-해당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

〈조건 미충족〉 또는 피해 학생의 자체해결 미동의

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

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심의·의결

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시 학부모 및 관련 학생의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(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서 심의·의결 주관)

* 심의 결과 <u>조치 없음</u> 이 나올 수 있음.		
피해학생 보호조치	가해학생 선도조치	
1호: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	1호: 서면사과	
2호: 일시보호	2호: 접촉금지	
3호: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 양	3호: 교내봉사	
	4호: 사회봉사	
	5호: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	
	6호: 출석정지	
	7호: 학급교체	
	8호: 강제전학	
	9호: 퇴학(초등은 해당안됨)	

* 가해학생이 2, 3, 4, 6, 7, 8호의 조치를 받는 경우 특별교육을 부과받게 되며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이부과됩니다.

2025. 3. 25.

이천송정초등학교장